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에 대한 공고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프로텍은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증권법 제25조 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12일

주식회사 프로텍

대표이사 최승환 (직인생략)